

## ■ 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신설 2022. 1. 6.>

###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· 기록 방법(제11조 관련)

#### 1. 측정방법

가. 측정 지점: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(雨水吐室: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).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.

나. 측정 횟수: 연 2회 이상

다. 측정 기간: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

라. 측정 항목

1) 수량

2) 수질

가)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BOD)

나) 총유기탄소량(TOC)

마. 측정기준

1) 수량 측정은 「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(이하 "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"이라 한다)에 따르고, 공인기관의 검정 · 교정을 받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.

2) 수질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.

2. 측정결과의 기록 방법: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고, 그 내용을 「하수도법」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